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기점검을 위하여 관계인이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규정의 규범력 회복을 위하여 그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518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권한위임규정 정비(안 제21조제7호의2, 제7호의3, 제11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에 대한 시·도지사의 수리권한, 사용 중지하려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실시한 안전조치가 부적합한 경우에 행하는 시·도지사의 안전조치 이행명령권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수리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

나.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9 제1호다목)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는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된 과태료 처분의 다음 차수로 하고, 가중처분 적용기간 내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다.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정비(안 별표 9 제2호)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 1차 위반시 그 금액을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액과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상 상한액의 50%로 설정하고, 차수가 거듭될수록 부과하는 금액도 법률상 상한액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조정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29. ~ 9.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을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으로 한다.

제21조에 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의 수리

7의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명령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수리

별표 9 제1호나목 후단 중 “위반횟수는”을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로, “한 날과”를 “받은 날과 그 처분 후”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의 과태료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0
400
500

별표 9 제2호나목의 과태료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0
400
500

별표 9 제2호다목의 과태료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0
350

500
500

별표 9 제2호라목의 과태료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0
350
500
500

별표 9 제2호마목의 과태료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0
350
500
500

별표 9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과태료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0
350
500
500

별표 9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 5호의2	
(1) 신고기한(중지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날)의 다 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50
(2) 신고기한(중지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날)의 다 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50
(3) 거짓으로 신고한 자		5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0

별표 9 제2호사목의 과태료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0

350
500
500

별표 9 제2호아목의 과태료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0
400
500

별표 9 제2호자목의 과태료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0
400
500

별표 9 제2호 위반행위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 제1항제7호의2	
1) 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한 자		250
2) 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제출한 자		350
3)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

별표 9 제2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의 과태료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0
400
500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 이 되는 탱크 등) ①법 제8조제 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 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 검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 이 되는 탱크 등) ①-----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용접부검사 : <u>제1호의 규정에 의한</u>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 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 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 하여진 <u>법 제18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u>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 한다.	3. ----- <u>제1호에 따른</u> -- -----. ----- ----- ----- ----- <u>법 제18조제3항에 따른</u> -----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u> <u>여</u>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 · 지반검사, 충수 · 수압검사, 용 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	② <u>법 제8조제2항에 따른</u> ----- ----- ----- -----

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 등) <u>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u> 제21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u>법 제30조제1항에 따라</u>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 다. 1. ~ 7. (생략) <u><신설></u> <u><신설></u> 8. ~ 10. (생략) <u><신설></u>	----- --.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 등) <u>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u> ----- -----. 제21조(권한의 위임)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의 수리</u> <u>7의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명령</u> 8. ~ 10. (현행과 같음) <u>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수리</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연 락 처	(044) 205 - 7482